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8.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73호로 2025년 8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돕는 착한가격업소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항목을 마련하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물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호)
- 나.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및 채용 근거 규정 신설(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 4)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025. 7. 3.~7.23./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일부 개정 배경 및 취지

- “착한가격업소”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를 뜻하며, △가격 기준(지역 인근 상권 평균가격 미만), △위생·청결 기준(주방 청결도, 위생복 착용, 수저 소독 여부 등), △공공성 기준(지역화폐 가맹점,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함. 2011년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를 시작하여, 영등포구 관내에는 총 76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규정을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며 개인 서비스 업소의 매출 증대를 통해 서민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제출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종량제봉투 지원</p>	<p>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종량제봉투 및 <u>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u></p>

-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항에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제8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3. 지역물가 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운영 및 지역 물가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p>

- 안 제8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의 채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본 조항 신설로 인해 기존 제8조는 제9조로 조문 이동하였으며, 근거 규정 없이도 시행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시행규칙 제정 근거 규정인 제9조는 삭제하여 조례 정비를 함.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규정 확대, △물가모니터요원 채용·운영 규정 신설을 통해서 우리 구(區) 지역 물가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함.
-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된 지원 사항의 추가는 정책 수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현재 국비(30%), 시비(70%)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올 초('25.1.9.~1.24.) 관내 착한가격업소 68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지원 내용 및 방식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상·하수도 등 공과금 지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였음. 조사 결과¹⁾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업소가 물품의 개별구매 방식(업소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 후 증빙자료 제출 시 금액 정산) 과 공과금 지원을 선호하였음.
- 물가 상승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원금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종량제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1) 지원 방식 선호도 조사 결과

(출처: 2025년 착한가격업소 설문조사 결과보고, 일자리경제과-5157(2025.2.13.)호)

지원방식	응답 수	희망비율 (응답수/68개소*100)
물품(일괄지급)	9	13%
물품(개별구매)	56	82%
공과금	46	67%
소독/방역	5	7%
기타	3	4%

* 51개 업소 중복(2개) 선택, 17개 업소 1개 선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의 단가는 매우 낮아 대량 구매에 따른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과금 지원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업소에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 및 참여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²⁾하고 있으며, 수시로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가격 변동, 휴·폐업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여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려 함. 이러한 중앙부처 계획에 발맞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의 근거 규정을 명시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 참고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서울시 내 자치구는 총 12곳(강남, 강북, 관악, 광진, 노원, 동대문, 서초, 성동, 양천, 용산, 종로 중구)이며 우리 구(區)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 본 일부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산정하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음.
- 공공요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모품 뿐만이 아니라 공과금도 지원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2025년 3월 일제정비 실시 결과,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총 1만 59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2월(9천 723개소) 대비 546개소가 새로 지정되고, 210개소는 지정이 취소된 수치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4.17.) 착한가격업소 1만개소 돌파!)

이므로 추가 비용 발생은 없으며,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3명*6月, 연중 필요시 6개월 이내로 한시적 인력 운용)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는 총44,099천원을 추산하였음.

참 고 자 료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